

제255회 정례회
2006.12.18(월)

검 토 보 고 서

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·세출추가경정예산(안)

- 여성정책관실, 복지환경국,
- 자치연수원, 보건환경연구원

교육사회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12일

□ 여성정책관실 소관

《총 예산규모》

⇒ 720억 4백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.0%인 41억 505만 5천원이
증액 편성

《성질별 증감내역》

- 여성복지분야

⇒ 29억 7,59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,180만 9천원(0.7%)이
증액

- 아동복지분야

⇒ 677만 23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억 8,324만 6천원
(6.4%)이 증액

《사업별 증감내역》

- 국고보조사업

⇒ 632억 8,92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억 9,384만 2천원(6.7%)이 증액

- 자체사업

⇒ 72억 7,46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,121만 3천원(0.4%)이 증액

- 경상비사업

⇒ 14억 4,01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,000만원(5.9%)이 증액

《검토결과》

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과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

사항별 설명서

- P 54, 57 제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집기류 구입 세부 내역
- P 58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 감액의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□ 복지환경국 소관

《총 예산규모》

⇒ 3,742억 6,1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△1.5%인 55억 5,754만 7천원이 감액 편성

《성질별 증감내역》

- 보건위생분야

⇒ 331억 2,36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,562만원($\Delta 0.3\%$)이 감액

- 환경보전분야

⇒ 232억 5,56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억 9,500만원($\Delta 8.3\%$)이 감액

- 수질보전분야

⇒ 863만 8,8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2,300만원($\Delta 0.5\%$)이 감액

- 일반사회복지분야

⇒ 62억 5,70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8,700만원(6.6%)이 증액

- 장애인복지분야

⇒ 319억 9,83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3,365만 6천원(1.1%)이 증액

- 노인복지분야

⇒ 450억 4,03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1,787만 7천원 (0.3%)이 증액

- 생활보호분야

⇒ 1,454억 9,00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억 220만 6천원 ($\Delta 2.6\%$)이 감액

- 징수교부금

⇒ 27억 80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5,550만원(15.1%)이 증액

《사업별 증감내역》

- 국고보조사업

⇒ 2,965억 2,47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5억 5,754만 7천원
(△2.0%)이 감액

- 자체사업

⇒ 527억 4,6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,497만 2천원(0.1%)이 증액

- 경상예산

⇒ 16억 4,91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,700만원(1.0%)이 증액

《검토결과》

-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과 분권교부세 추가 지원 및 물기금 사업 지원을 상향으로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으나

사항별설명서

- P 6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우수기관 지원사업비 전액 감액의 구체적 사유
- P 65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감액 사유
- P 67 일반경상수용비와 기본여비 증액사유
- P 68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의 구체적 내역 및 3회추경에 계상하여야할 시급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□ 자치연수원 소관

《총 예산규모》

⇒ 총 예산액은 44억 6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00만원(0.2%)이 증액 편성

- 증액편성 사유는 공무원교육관의 강의실을 쾌적하게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에어컨(2대)구입을 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

□ 보건환경연구원 소관

《총 예산규모》

⇒ 44억 7,64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0만원(Δ 0.1%)이 감액 편성

- 감액편성 사유는 환경부에서 대기측정소 2개소에 대한 정도검사를 실시하였기 이에 따른 검정료를 감액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음